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배준영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2200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8.

발의자 : 배준영 · 추경호 · 김석기
김위상 · 서명옥 · 서지영
김성원 · 이상휘 · 조은희
정동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,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,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1기 신도시 노후화, 구도심과 신도심 개발 격차 등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,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빙집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을 위한 지방세특례 역시 계속해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도시개발사업,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7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)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3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| |
|--|---|
| 1. ~ 3. (생 략) | --. |
| ⑤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재개발사업”이라 한다)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<u>2025</u> | 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다만,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|
| 「지방세법」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|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|
| 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|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 |
| 1. ~ 3. (생 략) | --. |
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 --. |
| ⑤ ----- | ----- |
| ----- | ----- |
| ----- | ----- |
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 -----. |